

의안번호	제 호
의 연 월 결 일 일 일	2015년 월 일

2016년도 세출예산 경상북도 출연 계획 동의안

제 출 자	구미시장
제출연월일	2015년 월 일

2016년도 세출예산 경상북도

출연 계획 동의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15. 11. .

제 안 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2016년도 세출예산 경상북도 출연 계획
 - 출연 예정액 : 금284,000천원
 - 출연 필요성
 - 한·미 FTA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완화 및 대응력을 강화
 - 출연근거법령 :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(기금의 조성)

3. 출연안 : 별첨

4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5. 관련법령 :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

□ FTA대책기금 확대조성 기금 출연금 운영

출자·출연액	금4,772,000천원 ('16년 284,000천원, 전년대비 0천원)
출자·출연기관	○ 기 관 명 : 경상북도 ○ 대 표 :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○ 소 재 지 :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(산격동)
사 업 내 용	
출자·출연필요성	○ 한·미 FTA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완화 및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'93년부터 조성·운영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을 FTA대책기금으로 확대 조성 및 운용 필요
사업개요	○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현황 - 조성기간 : 1993 ~ 2014 - 출 연 금 : 179,716백만원 (경북도 40,893, 금융기관 15075, 23개시군 71,700, 가금이자 52,048) ○ 지원사업 : 중앙지원이 어려운 지역특색사업, 긴급 농가경영자금 등 ※ 구미시 출연금 지원현황 - 지원기간 : 1993 ~ 20015(23년) - 지원금액 : 47.7억원
근거·법령	○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○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
검토의견	○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수있다“라고 규정되어 있음 ○ 아울러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금의 지원한도는 개인 2억원까지, 생산자단체는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있음. ○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연금의 근거 법령으로 판단됨
소관부서	○ 농정과장 : 이 형 근 (480-5760)

관 계 법 령

○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(기금의 조성)

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 및 농·수협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
2. 농어촌 투·융자 재원 등 국고지원금

소관 실·과		농 정 과
입 안 자	담 당 관	이 형 근
	담 당	강 의 규
	담 당 자	차 명 규 (480-5763)